##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소병훈·박 정·김교흥

허 영・백승아・정성호

이워택 • 김영진 • 서삼석

이수진 · 서영석 · 정준호

박희승 · 정태호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

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 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 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신 설>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